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-125호

「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」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1월 30일

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1. 개정이유

「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」개정에 따라 기구 신설·폐지 및 명칭변경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신설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에 추가함(안 제3조).
- 나.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을 과학경제국으로 변경함(안 제3조).
- 다. 폐지된 과학문화산업본부를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에서 삭제함(안 제3조).

3. 의견제출

- 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운영수석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제출 사항
 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 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주소 전화번호
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) (전화 042-270-5121, FAX 042-270-5019, E-mail : ychml1@korea.kr)
- 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 중 "경제산업국, 과학문화산업본부"를 "과학경제국"으로 하며, "교통건설국"을 "교통건설국, 대중교통혁신추진단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	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
(생략)	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경제산업국, 과학문화산업본부, 도시	4. <u>과학경제국,</u> , <u>교통건설국,</u>
재생본부, 교통건설국, 도시주택국, 건설	대중교통혁신추진단,
관리본부, 농업기술센터, 대전도시공사,	
도시철도공사, 대전마케팅공사	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규

□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

제5조(실·국·본부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·시 민안전실·<u>과학경제국</u>·자치행정국·문화체육관광국·보건복지여성국·도시 재생본부·환경녹지국·교통건설국·<u>대중교통혁신추진단</u>·도시주택국 및 소방 본부를 둔다.